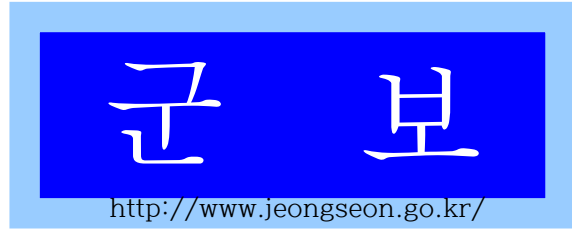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30호 2020. 5. 20.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107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59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5
- 정선군 공고 제2020-631호 2020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운영 계획 공고.....9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6호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21
-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32호 정선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36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107호

정선(신동) 군계획시설(하수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의제 협의 인가한 정선(신동) 군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5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 83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하수도) 사업
- 2) 명 칭 : 신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 면 적 : 38,077m²
- 2) 규 모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고
시설명	면적	금회시행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40,382m ²	■ 사업부지면적 : 38,077m ² ◦ 당 초 : 설비동, 호퍼실동 신축 A=501.72m ² ◦ 변 경 : 건조장 증축 A=188.00m ² ◦ 총면적 : 689.72m ²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12.31.(기간 변경 없음)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편입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신동읍 예미리	824-1	잡	4,665	4,665		정선군	
2	“	824-2	잡	498	498		정선군	
3	“	824-3	잡	325	325		정선군	
4	“	824-4	잡	313	313		정선군	
5	“	824-5	잡	331	331		정선군	
6	“	825-1	잡	3,394	3,394		정선군	
7		826	잡	1,553	1,553		정선군	
8		830	잡	21,549	21,549		정선군	
9	“	832	잡	231	231		정선군	
10	“	835-2	잡	1,193	1,193		정선군	
11	“	835-3	잡	615	615		정선군	
12	“	821	전	813	813		정선군	
13	“	산2-4	임	2,597	1,359		국(산림청)	
14	“	산2-5	임	1,811	1,238		국(산림청)	
계				39,888	38,077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59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112호(1987. 9. 09)호로 최초 결정되어 정선군 고시 제2013-57호(2013. 7. 19)호로 조성계획 승인된 임계 제3공원(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2일

정 선 군 수

가.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나.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임계제 3공원	어린이공원	임계면 송계리 692번지	2,334	증107	2,441	강고제112호 (1987.9.09.)	

2)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임계제3공원	◦ 면적 변경 증)107㎡	◦ 지적 면적 오차에 따른 변경

3)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구 분		결 정 면 적				비고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2,334.0	증)107	2,441.0	100.0	100.0	
세부 시설	소계	1,398.0	감)15	1,383.0	59.9	56.5	
	편익시설	108.0	감)90	18.0	4.6	0.7	
	유희시설	462.0	감)140	322.0	19.8	13.2	
	휴양시설	112.0	감)112	-	4.8	-	
	조경시설	152.0	감)152	-	6.5	-	
	운동시설	-	증)150	150.0	-	6.1	
	도로 및 광장	564.0	증)329	893.0	24.2	36.5	
녹지 및 기타		936.0	증)122	1,058.0	40.1	43.5	

4) 세부시설계획 변경(안)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면적(㎡)	도면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	규모 수량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34.0		-	-	계		2,441.0	27	-	-	
편익 시설	소 계		108.0		-	-	소 계		18.0	1	-	-	
		화장실	55.0		-	-	가	화장실	18.0		-	-	
		휴게소	53.0		-	-	-	-	-	-	-	-	
유희 시설	소 계		462.0		-	-			322.0	9	-	-	
		놀이터	372.0		-	-	나	어린이놀이터	283.0		-	-	
					-	-	①	그네	-	1	-	-	
					-	-	②	시소	-	2	-	-	
					-	-	③	조합놀이대	-	1	-	-	
					-	-	④	막구조파고라	-	1	-	-	
		운동기구	90.0		-	-	다	유아놀이터	39.0		-	-	
					-	-	⑤	유아놀이기구-1	-	1	-	-	
					-	-	⑥	유아놀이기구-2	-	1	-	-	
					-	-	⑦	유아놀이기구-3	-	1	-	-	
					-	-	⑧	유아놀이기구-4	-	1	-	-	
휴양 시설	소 계		112.0		-	-	소 계				-	-	
		파고라1	57.0		-	-	-	-	-	-	-	-	
		파고라2	55.0		-	-	-	-	-	-	-	-	

조경 시설	소 계		152.0		-	-	소 계			-	-	-	
		분수대	148.0		-	-					-	-	
		음수대	4.0		-	-					-	-	
운동 시설	소 계		462.0		-	-	소 계		150.0	6	-	-	
		운동시설	462.0		-	-	라	운동공간	150.0		-	-	
					-	-	⑨	운동기구-1	-	1	-	-	
					-	-	⑩	운동기구-2	-	1	-	-	
					-	-	⑪	운동기구-3	-	1	-	-	
					-	-	⑫	운동기구-4	-	1	-	-	
					-	-	⑬	운동기구-5	-	1	-	-	
도 로 및 광 장	소 계		564.0		-	-	소 계		893.0	12	-	-	
		광장	564.0		-	-	마	광장	893.0		-	-	
	⑭						등의자	-	11	-	-		
	⑮						사과조형물	-	1	-	-		
녹 지	소 계		936.0		-	-	소 계		1,058.0		-	-	
		녹 지	936.0		-	-		녹지	1,058.0		-	-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도면 : 별도첨부

라. 공람장소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임계면사무소

마.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2020. 5.12 ~ 5.27)

바.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도시과 및 임계면사무소에 서면제출

사. 관련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임계면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도시과(☎ 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랑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0. . .
공 랑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랑 의 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공고 제2020-631호

『2020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운영 계획』 공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정 선 군 수

가. 운영기간 : 2020년 6월 1일 ~ 6월 30일(30일)

※ 7월 1일부터는 기존 인센티브 금액 지급

나. 지원대상

- 1)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4조, 전국)
- 2) 정선 시티투어 모객 여행사
- 3) 내일로 이용하는 개별관광객

다. 지원내용 및 조건

구 분	대상기준	인원기준	지원기준(원)			지원조건	비고
			당일	1박	2박 이상		
당일·숙박 관광	내국인	버스1대당 (20명이상)	200,000	400,000	600,000	• 당일관광 관내식당 1식+주요관광지	중복 지원 금지
	외국인	버스1대당 (10명이상)	200,000	400,000	600,000	2개소 관내식당 2식+주요관광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단	버스1대당 (20명이상)	200,000	300,000	400,000	1개소 • 숙박관광 관내식당 2식+주요관광지 2개소	
시티투어 단체관광	내·외국인	4명 이상	60,000 (1인당 추가 시 10,000원)				
내일로 이용객	개별 관광객	1명	20,000 (정선군 관내 숙박시)				

※ 관내식당: 1식 8,000원/인 이상 충족 시 지급 (여행가이드 및 기사 제외)

※ 증빙서류(단체관광객 포함):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결제 영수증만 인정 / 간이영수증 불인정

라. 보상금 지급: 서류심사 후 지원조건 충족 시

마. 주요관광지

분류	주요관광지	비고
무료관광지	정선아리랑시장	
유료관광지	스카이워크 & 쥘와이어, 삼탄아트마인, 화암동굴, 화암카트체험장, 정선레일바이크, 벅스랜드(스카이박스), 정선 양떼목장, 정선 아기동물농장	
체험마을	개미들마을, 덕우리체험마을, 365행복마을, 솔돌마을	

바. 변경사항

○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금액 100% 상향 : 06. 01 ~ 06. 30(여행일 기준)

※ 7월 1일부터는 기존 인센티브 금액 지급

■ 세부 운영계획

가.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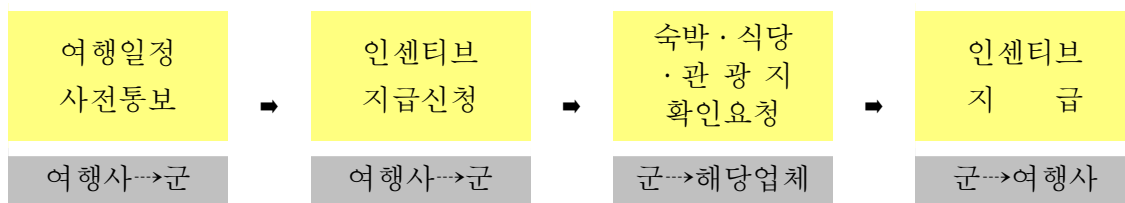
- 1) 방문 5일전 사전 신청해 협의된 【서식1】 단체관광객 사전통보서 (일정표 포함)를 정선군청 문화관광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2) 사전통보서를 제출한 여행사는 정선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서식2】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문화관광과에 신청한다.
- 3) 내일로 개별관광객은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3】를 작성해 정선군청 문화관광과에 신청한다.
- 4) 시티투어 유치 여행사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서식4】를 작성하여 정선군청 문화관광과에 신청한다.

나. 지원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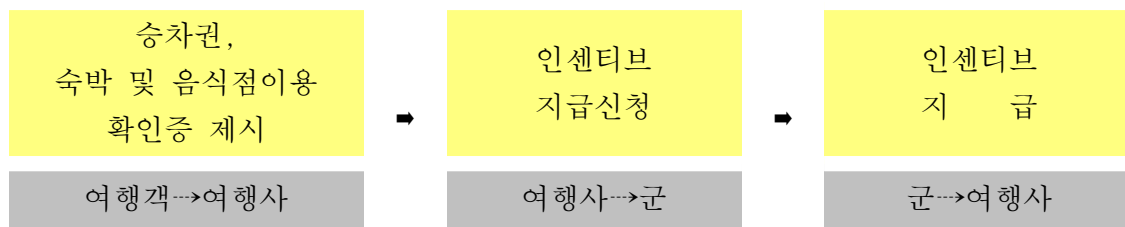
- 여행사 관계자 (기사, 안내원 등)
- 군 초청 행사로 진행되는 경우, 강원도 또는 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나 투어(축제, 팸투어, 체험관광 등)
- 관내 여행 상품행사 일정을 정선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 및 그 가족
- 정치·종교행사 등 그 밖의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향후 완전 배제

다. 신청 및 지급절차

1) 처리절차(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2) 처리절차(열차 이용객)



3) 사전신청서 제출(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한함)

- 접수시기 : 관광 시행 7일 전
- 접수방법 : 우편, 팩스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문화관광과(우 26131)
 - (☎) 033-560-2379 (FAX) 033-560-2593
- 신청서류 : 단체관광계획 사전 통보서 **【서식1】**

4) 지급신청

- 신청기간 : 관광종료 후 30일 이내
- 지급시기 : 신청 순으로 월별 지급
- 지급방법 : 여행사 계좌입금
- 구비서류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 원본(**【서식】** 참조)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정선군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 하지 않음.
- 예산을 초과해 신청되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원함.
- 인센티브 지급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선군 방침과 결정에 의함.

※ 붙임 : **【서식】** 참조

【 서 식 1 】

단체관광계획 사전 통보서

☐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 표 자	
주 소			
등 록 일		등록번호	
연 락 처	☎ FAX)		

☐ 관광계획

관 광 구 분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 단체여행
기 간	2020. . . ~ 2020. . . (박 일)
학 교 (단 체)명	
인 원	명
여 행 일 정	별첨 참조
숙 박 업 소	
인 술 자	(연락처 :)

위와 같이 정선군 관광을 실시하고자 계획서를 통보합니다.

- 첨부서류 1. 여행일정표(안)
2. 단체관광객 명단(개별명단)

2020년 월 일

○○○여행사 (인)

정선군수 귀하

【 서식 1-1 】

여 행 일 정 표 (예시)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분)			
첫 째 날	08:00	12:00	4H	o 서울 → 정선 도착	
	12:00	13:00	60	o 중식	
	13:00	15:00	120	o 정선5일장, 아라리촌	
	15:00	15:30	30	o 정선→화암면이동	
	15:30	17:30	120	o 화암동굴, 미술마을, 화암약수	
	17:30	18:00	30	o 화암면→고한읍 이동	
	18:00	19:00	60	o 석식	
	19:00			o 숙박 및 자유시간	
둘 째 날	07:00	08:00	60	o 기상	
	08:00	10:00	60	o 조식후 삼탄아트마인	
	10:00	11:00	60	o 사북읍 → 여량면 구절리역 이동	
	11:00	12:00	60	o 오장폭포, 여치카페	
	12:00	13:00	60	o 중식	
	13:00	14:00	60	o 레일바이크	
	15:00			o 서울출발	

【 서식 1-2 】

단체관광객 명단 (예시)

연번	거주지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명)	성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성명은 1인당으로 작성할 것.

【 서 식 2 】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예시)

□ 지급 신청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여행사 현황

여 행 사 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연 락 처	☎ FAX)		

□ 숙박실적

숙박업소	투숙기간	숙박인원	인 술 자		방문관광지
			성 명	연락처	
(예시)정선평텔	20. 1.1. ~ 1.5.	30			아라리촌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1. 숙박업소명의 카드·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사본 1부.
 2. 입장(관람)권 구매 카드·현금영수증 사본 1부.
 4. 여행업 사업등록증 및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의) 사본 1부.

2020년 월 일

○○여행사 (인)

정선군수 귀하

【 서 식 3 】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예시)

☐ 지급 신청액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여행사 현황

여 행 사 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계 좌 번 호	○○은행 (예금주)		
연 락 처	☎ FAX)		

☐ 숙박실적

연 번	성 명	연 락 처 (핸드폰번호)	지원요청액(원)	방문관광지
계			20,000	
1	홍길동	010-000-0000	10,000	아리리촌
2	황진희	010-000-0000	10,000	

위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내일로(하나로, 미즈레일) 승차권사본 및 숙박신청확인증 사본 1부
2.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명의) 사본 1부.

2020년 월 일

관광객 ○○○ (인)

정선군수 귀하

【 서 식 4 】

시티투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 지급 신청액 : 금50,000원(금오만원)

☐ 여행사 현황

여행사명		대표자	
주 소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연 락 처	☎ FAX)		

☐ 유치 실적

연번	여행기간	탑승인원	대표 예약자		탑승장소
			성 명	연락처	
1	20. 1.1.	10명			정선역

위와 같이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정선시티투어 예약 확인 서류 1부.
2. 탑승객 명단 1부.
3. 여행업 사업등록증 및 통장(사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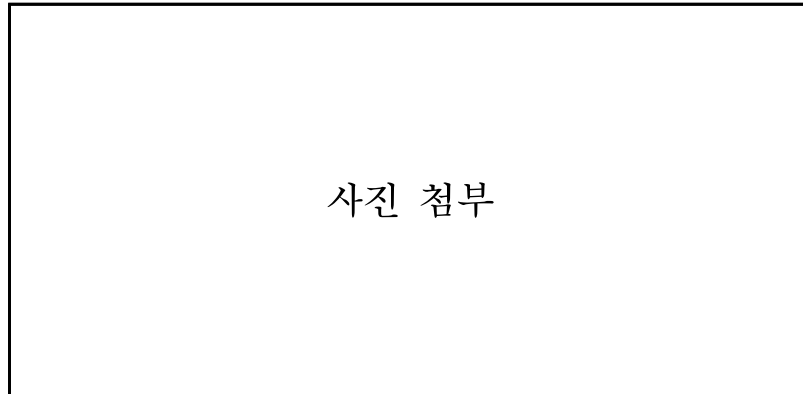
2020년 월 일

○○여행사 (인)

정선군수 귀하

【 서 식 5 】

정선 5일장 방문 확인증



※ 관광객 단체사진 1점 이상 (정선 5일장 배경 필수)

□ 단체관광객 현황

방문일시	방문인원	국적 (지역)	인솔자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직책 :

성명 : (서명)

(연락처 :)

※ 작성요령

- 확인자 직책은 문화관광해설사, 관광가이드의 담당자 직책을 표기
- 장날, 토요일은 5일장 내 근무하는 관광가이드(평일은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서명

【 서 식 6 】

시티투어 예약 확인 서류

시티투어 예약 화면(www.정선시티투어.com)

예약확인 및 취소

코스구분	아리랑 열차 연계형
탑승지 선택	11:10 하이캐슬리조트
탑승일자	2018년 12월 23일
예약자 이름	홍길동
예약자 주소(선택사항)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 (신사동, 신사미타워)
핸드폰 번호	010-1234-5678
인원선택	성인 2명 중고등학생 2명 초등학생 1명 * 성인 10,000원, 중고등학생 8,000원, 초등학생 5,000원 * 초등학생 이하-36개월 이상 3,000원 * 이름 '정선아' 무료(신분증 제시 필수)
입금 계좌번호	국민 123-123123-123123 정선시티투어
환불계좌	*무통장 또는 계좌이체 입금 시에만 기재해주세요.(예약 취소 확인 후 7일 이내 환불)
총금액 41,000원	

계좌 입금 확인내역서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6호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정선군의회회장

1. 추진배경

-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등록, 활동범위,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7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예고기간 : 2020. 5. 14 ~ 5. 20 (6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0일까지 정선군의회 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 함으로써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정선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정책개발비”란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1. 연구활동기간이 종료한 때
2.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선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변동된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8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 및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계획서의 작성·변경 승인
3. 연구비의 책정·조정, 사용내역 및 환수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장 및 의원, 사무과장, 전문위원(5급 상당)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2.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이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2. 필요할 경우 대표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해당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0조(정책개발비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연구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 그 밖의 필요경비
-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3조의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정선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향후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인적사항

성 명	서 명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 동 일 자	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 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예정)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세부내역 별첨)	
기 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	당초	연구주제	
		연구목적	
	변경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심사결과 통보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 단체의 ○○년도 연구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대 표 자		의원
연 구 주 제		
심 사 결 과	심 사 내 용	
	결 과	

년 월 일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정선군의회 의장 / 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선군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활동 활성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별표 기준참고)	물품구입 및 인쇄비	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기 타	금 원(₩)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임 1. 연구활동 세부내용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 (인)

정선군의회 의장 귀하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	정산내역 기준	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	영수증 첨부
행사비용	○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식대 등)	영수증 첨부
비 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 관리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별도한도 산정 시 (지방의원 수 × 500만원)를 추가 반영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

현 행	개 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현행	개정																								
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신 설>	②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u>의원정책개발비</u> ① <u>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u> - <u>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u> ※ <u>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u> ② <u>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 ※ <u>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u>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table><tr><th>그룹</th><th>편성목</th><th>설정(통계목 포함)</th></tr><tr><td rowspan="4">200</td><td rowspan="4">205 의회비</td><td>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td></tr><tr><td>09. 의장협의체 부담금</td></tr><tr><td>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td></tr><tr><td>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td></tr></table>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table><tr><th>그룹</th><th>편성목</th><th>설정(통계목 포함)</th></tr><tr><td rowspan="4">200</td><td rowspan="4">205 의회비</td><td>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td></tr><tr><td>09. 의원정책개발비</td></tr><tr><td>1. <u>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u></td></tr><tr><td>10. 의장협의체 부담금</td></tr><tr><td></td><td></td><td>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td></tr><tr><td></td><td></td><td>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td></tr></table>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원정책개발비	1. <u>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u>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일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원정책개발비																							
		1. <u>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u>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정선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0-32호

정선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특화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신활력 플러스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9조~안 제10조)
-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소장(참조: 농업축산과장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농정기획담당(전화: 033)560-2371, 팩스: 033- 560-2599, 이메일: kja9905@korea.kr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정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사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사업계획수립,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정선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운영) ① 군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전담부서는 사업의 발굴,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단 구성 운영 및 사후 관리를 통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총괄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군수는 추진단과 공동으로, 사업의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현황과 여건
2. 기본구상
3.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
4. 투자 및 사업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단 설치와 운영) ① 군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③ 추진단은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되,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④ 사무국은 상근직원을 배치하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활동조직 발굴 및 지원 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8조(추진단의 업무) ① 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와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기획, 사업 발굴·집행 및 관리, 활동조직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 총괄
3. 그 밖에 군이 위탁한 사업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필요한 지원사업 등

제9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선이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업 기반 조성 및 중·장기 발전계획
3. 사업 과제 발굴 및 육성 지원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명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농촌개발 및 농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관련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사업 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육성 지원
3. 주민 주도의 농촌체험프로그램 계획 수립
4. 마을만들기협의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지역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

동

5. 농촌체험공간 조성사업
6.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사업 관련 교육, 자문,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8. 농촌자원 산업화와 관련한 사업
9.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현장지원 인력, 단체, 기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